

## 라벨위원회 고시

###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라벨 관리 대상 상품 지정

현재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태양광 패널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제품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필요하고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관련되며, 이를 라벨 관리 대상 상품으로 지정하면 소비자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를 라벨 관리 대상 상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불기 2541년(서기 1998년) 소비자보호법(제2호)으로 개정된 불기 2522년(서기 1979년) 소비자보호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라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 본 고시에서,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전기기기에 공급하는 전기에너지 저장장치를 말한다.

제2조.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를 라벨 관리 대상 상품으로 지정한다.

제3조. 제2조에 따른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문구, 도형, 도안 또는 그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구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해당 상품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태국어 또는 외국어와 병기한 태국어로 표시하여 도형, 도안 또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되어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상품의 유형 또는 종류의 명칭
- (2) 태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의 명칭 또는 태국에 등록된 상표
- (3) 판매를 목적으로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명칭 또는 태국에 등록된 상표
- (4) 수입 상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 (5)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왕국 내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소재지
- (6) 밀리미터 단위의 크기 또는 치수 및 킬로그램 단위의 상품 질량.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7) 배터리의 유형. 예를 들면 납축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있다.
- (8) 배터리 용량(Battery Capacity).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9) 배터리 전압(Battery Voltage). 사용하는 단위는 정식 명칭, 약칭 또는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10) 사이클 수명(Cycle Life)

(11) 충방전율(C-Rate)

(12) 사용 온도 범위(Operating Temperature Range)

(13) 소비자가 사용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방법.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에서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기기기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14)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 또는 보관상의 권고사항. 예를 들면 그늘지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며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팽창, 누액, 이상한 냄새 또는 이상 발열 등 이상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열, 화염 및 충격을 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15) 경고 또는 주의사항. 예를 들면 분해하거나 개조해서는 안 된다, 배터리를 뚫거나 두드리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연기를 흡입해서는 안 된다, 누출된 액체 또는 화학물질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열원 가까이에서 두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팽창하거나 누액이 있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설명서에 정한 값을 초과하여 충전하거나 방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문구는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를 사용하고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문구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6) 납축전지의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충전 중에 수소 가스가 방출될 수 있다, 수소 가스가 쌓이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가까이에서 불꽃이나 화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문구는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를 사용하고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문구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7)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배터리가 단락되거나 손상되면 화재가 날 수 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서 두어서는 안 된다, 제조자가 정한 값을 초과하여 충전하거나 방전해서는 안 되며 배터리가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문구는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를 사용하고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문구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8) 제조 연월일. 다만, 명확한 제조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 연도와 주차 또는 제조 연월만 표시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에 따른 효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9) 유효기한 연월일 또는 권장 사용기한 연월일. 이는 사용수명이 있는 상품인 경우에만 표시하며, 해당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에 따른 효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 가격. 단위는 바트로 표시하며, 다른 통화 단위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8) 및 (19)의 문구는 일, 월, 연도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은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연도는 불기 또는 서기로 표시할 수 있다. 일, 월, 연도를 순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 또는 문자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 라벨의 문구는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는 라벨 면적에 상응하여야 하며, 글자의 높이는 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라벨 관리 대상 상품의 라벨을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모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상품 자체에 모든 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구, 도형, 도안

또는 그림 중 어느 하나를 상품, 용기 또는 포장의 어느 한 부분에 표시하거나,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삽입하거나 함께 넣거나,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문서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하거나, 상품, 용기 또는 포장에 설치하거나 표시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위치에 표시한 라벨을 합하였을 때 명확하게 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일: 불기 2569년(서기 2026년) 9월 14일

론나롱 폰피팟

라벨위원회 위원장